

『철학연구』

투고안내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학술지 검색
원고게재신청서

연구윤리규정

철학연구 연구 윤리 규정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가 발간하는 철학연구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의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사, 편집 등 철학연구의 발간에 관계하는 모든 이는 이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해당 부분은 제2장 (4조~8조), 제3장 제4장 1절~4절 (25조~38조), 제5장 1절 39조의 ①항~②항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4조(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관련 법규 준수의무)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1절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제9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 ② 저자들은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2절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제12조(저자결정 기준)

-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연구의 착상 및 설계
 - 데이터 수집 및 해석
 - 초고 작성
 - 최종 원고의 승인 등
-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노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3조(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가 있다.

제3절 데이터의 소유 및 공유

제15조(데이터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표본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제16조(직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소유권)

교수 또는 연구원이 학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연구의 결과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유이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 문제)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을 옮길 때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데이터의 소유 또는 공유 문제는 연구책임자와 학교 또는 연구기관과 다.

제18조(데이터 공유 및 공개)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표한 연구논문의 데이터 및 표본을 자신의 책임 하에 다른 연구자에게 지

제4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25조(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처)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통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26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연구부정행위

제27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 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그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문장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아이디어 표절)

-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개념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 ③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29조(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0조(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 또는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31조(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달라는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중복게재로 간주된다.
-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은 중복게재로 간주된다.

제32조(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판할 때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33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제34조(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일한 발명가로 승인받기 위하여 공동발명자에게 의도적으로 특허 출원을 알리지 않는 행위
- 공동연구의사실을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 연구결과를 검증받기 위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 연구계획이 해당분야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과대평가하는 행위
-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 인간피험자 보호 및 실험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연구비 유용행위
- 연구업적 및 결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제4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35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부적절한 출처인용
- 참고문헌 왜곡
-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36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한다.

제37조(텍스트의 재활용)

-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어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

제5장 이해상충

제1절 금전적 이해 상충

제39조(금전적 이해상충)

-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
-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철학연구소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는 1996년 설립 이후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철학적 안목으로 통찰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고, 철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동서 철학 간의 긴밀한 협력연구를 도모함으로써 한국 인문학의 견실한 이론 토대를 마련하며, 현대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철학 이론을 생산하고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적 실천 철학을 모색중이고, 연구 역량을 배양하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철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철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최근 포스트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감성의 인간학> 연구단 워크샵 안내
2017년 04월 17일 | by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7.04.14 (금) 전문가 초청 강연] 김용민 교수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2017년 04월 12일 | by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7.02.24 (금)] 고려대 철학연구소 <감성의 인간학 연구단> 워크샵
2017년 02월 11일 | by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연락처 정보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대학서관 125B
02-3290-1652 | ipsku.korea.ac.kr
ipsku@korea.ac.kr

위치안내

패밀리

COPYRIGHT © 2015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ALL RIGHTS RESERVED